

「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2022년 감사원 ‘공공앱 구축·운영실태(숲나들e포함)’ 감사 결과 산림청에서 「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의 개정 권고가 있어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- 자연휴양림 연중무휴 운영에 따른 시설 정비의 어려움 및 근무자들의 피로도 상승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여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휴관일 지정 신설(안 제4조)
- 시설사용 제한사항 추가 신설(안 제10조)
-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자 예약 기준 마련(안 제15조 부터 제16조)
- 매매·교환 등 금지에 관한 기준 신설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,
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휴관일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정기 휴관일을 지정함으로써 각종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·보수로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- 시설사용 제한사항 추가,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의 조항은 산림청의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